

-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89
------------	-----

2015년 6월 3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22일, 강감창 의원 외 1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5년 6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강감창 의원)

가. 제안이유

- 2013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현재까지 대중교통수단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해 생활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며, 특히 미흡한 대중교통 공급문제로 위례신도시 관련 철도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

여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으나,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이미 정부가 확정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법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바,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고,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정부가 확정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

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건의함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동의

3. 이송처

- 국 회 : 국회의장
- 정 부 :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현행 철도 위주의 「도시철도법」 체계 내에서는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고,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인 바,

※ 참고 : 노면전차 관련 「도시철도법」 및 「도로교통법」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정부가 확정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1)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노면전차 도입시 현행 법·제도상 문제점 및 입법 동향

- 첫째, 노면전차의 특성상 도로 포장 속에 궤도를 매설하여 도로를

1) 2014.5.12. 국토교통부 확정 및 서울시 통보

운행하고 노면전차가 비어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도로교통법」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철도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노면전차의 도입은 어려운 상황임

※ 참고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 둘째, 노면전차가 도로를 운행할 때 다른 차량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전차 운영 관련 전용신호, 표지, 교차로 통행우선순위, 노면전차 운전자의 의무 사항, 속도 등에 대한 법령이 없는 실정임
- 셋째,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도시철도 면허로 노면전차를 운행해야 하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상 도로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 면허체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²⁾이 2012년 12월 14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3년 4월 18일에 상정되었으나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2) 의안번호 : 1902893 / 제안자 : 정두언 의원 등 25인 / 제안일자 : 2012.12.3

- 2013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현재까지 대중교통 수단 등 사회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정부(국토교통부)가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 관련 법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위한 동 건의안은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³⁾을 제출하였음

3) 교통정책과-13025(2015.6.25.)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2013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현재까지 대중교통수단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해 생활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며, 특히 미흡한 대중교통 공급문제로 위례신도시 관련 철도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서울시 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정부가 확정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법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바,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